

『2025년 부천창업리그』 참가기업 모집 공고

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경연을 통한 창업능력 향상 및 부천시 지역 내 창업생태계 확산을 위한 『2025년 부천창업리그』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5년 4월 1일
부천산업진흥원 원장

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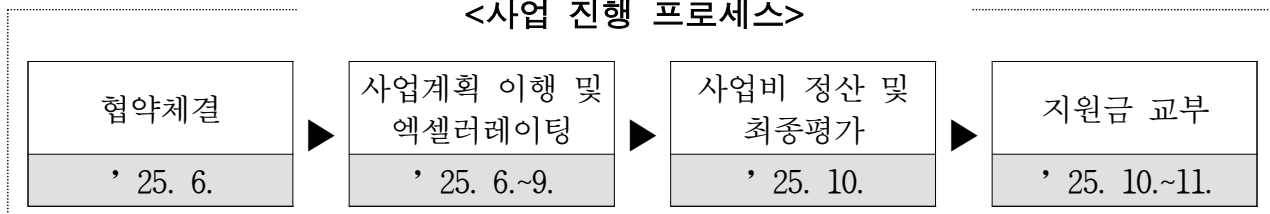
모집개요

- 모집기간** : 공고일 ~ 4. 30.(수) 18:00까지
- 모집대상** :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 기술창업기업

구 분	내 용
신청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공고일 기준, <u>창업 3년 이내</u> ※ 지역제한 없음, 예비창업자 지원 불가- 신청가능 업력 : 사업개시일 2022년 4월 1일 이후- 누적 투자유치 금액 10억원 미만인 창업기업
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관외기업 지원조건 : 협약 기간 내 <u>부천시에 사업장 이전</u>- 부천시 내 사업장 등록을 1년간 유지하는 보증보험증권 가입 후 사업비 지급- 공유 오피스의 비상주 사무실 등 이전 불가
모집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혁신기술 분야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창업 아이템(분야 택 1)
	ICT 제조융합IT 반도체 2차전지 친환경/기후테크 혁신소재 부품장비

- 선정규모** : 총 6개사 이내
- 지원절차**

<사업 진행 프로세스>



2

지원내용

□ **협약기간** : 협약시작일로부터 4개월 내외(' 25.6월 ~ ' 25.9월 예정)

□ **지원개요**

구 분	사업화 자금 지원	엑셀러레이팅(멘토링)
기 간	2025년 6월 ~ 9월	
대 상	유망 창업기업 6개사 이내	
내 용	시제품 제작, 지적권 획득, 외주용역 등	수요조사를 통한 멘토 매칭 후 애로 해결
지원금	기업당 평균 2,000만원 내외	-

1 사업화 자금 지원

구 분	합계	대상	우수상	장려상
입상자수	6	1	2	3
사업화 지원금	1억원	3,000만원	2,000만원	1,000만원

※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기업이 적거나 없을 수 있음

○ 신청한 과제와 관련된 시제품 제작, 지식재산권 획득,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 차등 지원

- 신청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경우에 한함
- 인건비는 사업화 자금의 30% 이내에서 지원

○ 사업화 자금은 협약 종료 이후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

- 협약된 자금 사용 계획에 따라 소요비용을 기업에서 선집행
- 관외 기업은 협약 기간 내 사업장(본점, 지점, 연구소 등) 부천 이전

○ 창업 기업의 사업계획서 상 사업비 구성은 전액 지원금으로 구성 가능

○ 협약기간 도과 후 별도 회계법인을 통해 사업비 집행 비용을 정산하며, 감사 결과에 따라 불인정·오집행 금액, 미사용 금액 미교부

○ 회계감사 시, 사업비 사용 내역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

○ 회계감사 수수료는 선정된 기업의 사업화 자금에 편성

※ 인건비, 재료비, 외주용역비, 기계장치, 특허 등 무형자산 취득비, 지급수수료, 광고선전비 (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장 제6조(사업비 비목)~제13조(광고선전비))

<부천 창업리그 사업비(현금) 집행 비목>

항 목	세부내용
인 건 비	• 수행기업 소속직원이 제품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,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
재 료 비	•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, 데이터 등을 구입하는 비용
외주용역비	• 수행기업이 자체적으로 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,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
기 계 장 치	•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,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
무 형 자 산 취 득 비	• 사업계획서 상의 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, 등록 관련 비용
지급수수료	•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(기술이전비,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, 시험·인증비, 회계감사비)
광고선전비	• 수행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,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, 일간지 등의 광고 게재,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

2 엑셀러레이팅 운영(멘토링)

- 기업경영, 인사, 마케팅, 시장, 비즈니스모델(BM), 회계, 법률, 투자/IR 등 기업 애로 사항과 관련하여, 진흥원 자체 전문가 Pool의 분야별 전문가 1:1 멘토링 추진
- 기업 수요 조사 후 전문가 매칭 및 멘토 결과보고서에 따라 수당 지급
- 일정 및 진행 횟수, 진행 방법을 기업과 멘토간 합의 하에 결정하되, 기업 당 3회 내외로 진행

3 기타사항

- 인센티브 부여

- 1 경기도 주관 경기창업공모전(2025) 1차 예선 면제(참가자격 해당 시)
- 2 부천벤처펀드 등 투자기관(VC, AC, 엔젤 등) 연계를 통한 투자유치 지원
- 3 부천시 중소기업 지원사업(진흥원 수행사업 포함) 참여 시 우대
- 국내·외 전시회 참가지원, 제품·부품 인증, 시제품 제작지원 등
- 4 그라운드21 등 창업시설 입주 시 우대
- 5 정부·지자체 등 창업지원사업 관련 컨설팅 지원
- 6 기타 진흥원 자체 사업 등에 기업 추천

3

신청자격 및 제외대상

□ 신청자격

구 분	내 용
신청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고일 기준, 창업 3년 이내 ※ 지역제한 없음, 예비창업자 지원 불가 - 신청가능 업력 : 사업개시일 2022년 4월 1일 이후 - 누적 투자유치 금액 10억원 미만인 창업기업
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관외기업 지원조건 : 협약 기간 내 부천시에 사업장 이전 - 부천시 내 사업자 등록을 최소 1년간 유지하는 보증보험증권 가입 - 공유 오피스의 비상주 사무실 등 이전 불가

<신청자격 세부조건>

-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시행령 제2조의 창업의 범위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사업 개시일 적용
 - 개인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 상 '개업연월일' 기준
 - 법인사업자 : 법인등기부등본 상 '회사성립연월일' 기준
 - 다수사업자 : [참고 1]에 따라 신청 사업자 및 대표자 기준 창업기업 여부 확인
 - 공동·각자대표 : 대표자 전원 '신청자격'에 해당되고, '제외대상'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

□ 제외대상

- 2022~2024 부천창업리그 입상 후 시상금 및 사업화지원금을 지원받은 기업
-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
-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사행성 및 환경오염 유발 등 반(反)사회적 성격의 창업아이템
- 단순 유통, 숙박 등의 업종 등 제조·지식기반이 아닌 창업아이템
- 신청일 기준 휴업·폐업 중인 기업
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,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
 - ※ 단, 접수마감일 이전 채무변제 완료 또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인정을 받은 경우 제외
-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
- 「경기도 범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」 제6조 및 「경기도 기업 지원사업의 범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(2025.1.17.)」에 따라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범위반 사실(1회 이상)이 있는 기업

※ 위반시설 적용 법률 : 공정, 노동, 환경, 납세 분야 11개 법률

- ① 공정거래법, ② 하도급법, ③ 표시광고법, ④ 근로기준법, ⑤ 산업안전보건법, ⑥ 폐기물관리법, ⑦ 대기환경보전법, ⑧ 소음진동관리법, ⑨ 물환경보전법, ⑩ 국세기본법, ⑪ 지방세기본법

4

신청방법

□ 참가신청

- 접수기간 : 2025. 4. 1.(화) ~ 4. 30.(수) 18:00까지
- 접수방법 : 부천산업진흥원 홈페이지(bizbc.or.kr) 온라인 접수
 - 참가신청서 등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함(홈페이지 다운로드)
 - 제출서류는 PDF 1개의 파일(파일명 ; ‘부천창업리그_기업명’)으로 제출
 - 접수마감 이후 수정 불가 및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
 - 접수 마감시간까지 사업 신청을 완료한 자에 한하여 평가
- 제출 서류
 - 참가 시 제출

구 분	제출서류	비 고
필수	1.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	[붙임 1]
	2. 사업자 증빙서류 - (개인)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- (법인)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	정부24, 홈택스, 법원, 인터넷등기소
	3.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	[붙임 2]
	4.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	정부24, 홈택스
	5. 참가서약서	[붙임 3]
	6. 참가자격 여부 확인서	[붙임 4]
	7. 기업의 범위만 사실(부존재) 여부 확인서	[붙임 5]
해당 시	8. 투자유치 실적	계약서, 협약서 등
	9. (관외기업 필수) 기업 이전 의향서	[붙임 6]

- 발표평가 통과 시 제출

구 분	제출서류	비 고
필수	1. 창업기업확인서	창업기업 확인시스템
	2. 사업비 사용 계획서	별도 서식 안내 예정

[유의사항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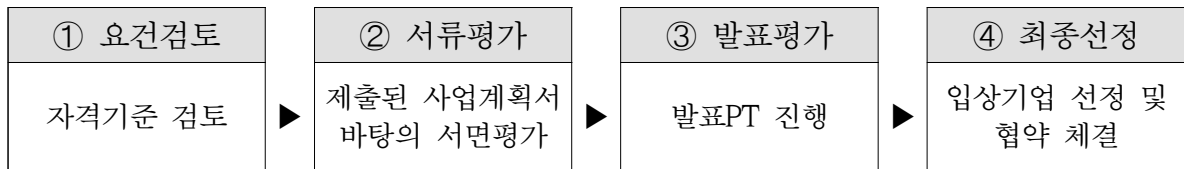
-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(사업자등록증 제외)
- 창업기업확인서의 경우 발급까지 10일 이상 소요되므로 사전 신청 요망

5

평가 및 선정

□ **평가절차** : 2단계 평가(서류→발표)를 통해 최종 선정 후 최종평가 진행

< 선정평가 절차 >



□ 평가방법

○ 창업 아이템(제품 또는 서비스 등)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, 성장전략, 대표자 및 기업의 보유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

○ 평가 관련 사항 및 자료는 일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

① **요건검토** : 제출 서류 바탕으로 자격 요건 검토

② **서류평가** : 선정 규모의 2배수 내외 선정

- 통과기업에 ‘창업기업 확인서’ 및 별도 발표자료(PPT 등) 준비 요청

③ **발표평가** :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창업기업 발표 및 질의응답

- 기업 대표자 발표를 원칙으로 함

-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은 추후 확정 후 통보 예정

○ 평가지표(서류 및 발표평가 공통)

평가항목	세부내용	배점
문제인식 (20)	• 창업아이템 배경 및 필요성의 이해도	10
	• 창업아이템 목표시장 분석의 타당성	10
실행가능성 (30)	• 창업아이템 현황 준비 정도	15
	• 창업아이템의 실현 및 구체화 정도	15
성장전략 (40)	• 창업아이템 BM 및 사업화 추진성과의 성장성	10
	• 창업아이템 사업화 전략의 타당성	15
	• 사업 추진 일정 및 자금 운용 계획의 타당성	15
팀 구성 (10)	• 기업 구성 및 보유 역량의 적정성	5
	• 중장기적 ESG 경영 도입 계획의 적정성	5

- ④ **최종평가** : 입상 기업의 협약기간 도과 후 회계감사 및 성과평가 진행
- 회계감사 : 회계법인의 감사를 통해 입상기업의 지출 증빙자료 타당성 및 사업비 집행 적정성 검증
 - 성과평가 : 창업기업 최종보고서 및 회계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사업 수행 결과물 및 사업 추진 성과 평가
 - 최종 성공 판정 받은 기업에 한해 사업화 지원금 교부

○ **평가지표(최종평가)**

평가항목		세부항목	평가내용
평 위 평 가	목 표 달 성	사업목표 달성 정도	• 계획 대비 목표의 달성 정도
	산출물 확인	(시)제품/서비스 확인	• (시)제품/서비스 구현 여부
		사업 수행 결과물 확인	• 계획 대비 사업수행 결과물 확인 여부
	사업비 집행	사업비 집행 적정성	• 시제품 재료비 및 외주용역비 등의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
사 업 성 과	매출, 고용, 투자 등 협약 기간 내 실적		
주 기 평 가	소재지 이전	관외기업의 협약기간 내 부천시로 사업장 개설/이전 여부	
	멘토링 실시	협약기간 내 멘토링 실시 횟수	

□ **운영일정**

운영단계	일정	수행내용
모집공고	'25.4.	• 진흥원 홈페이지 접수
↓		
서류평가	'25.5.	• 평가위원회의 서류평가 • 발표 평가 대상 기업의 2배수 내외 선정
↓		
발표평가	'25.5.	• 사업계획서에 기반한 기업 대표자 발표 및 질의응답 • 최종 입상기업 선정
↓		
협약 체결 및 사업화 지원	'25.6.~9.	• 입상기업 기업별 협약 체결 • 사업화 자금 및 액셀러레이팅(멘토링) 지원
↓		
보험증권 가입 및 회계감사, 최종평가	'25.10.	•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 • 회계감사 및 사업화 지원 결과 평가
↓		
지원금 교부	'25.10.~11.	• 최종 성공 판정 기업에 사업화 지원금 교부

※ 상기 일정 및 평가 방식은 대·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

□ 신청 시 주의사항

- 창업기업은 참가 신청 이후 공개된 내용의 보호를 위해 사전에 지식재산권의 획득 등과 같은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함
- 타인의 아이디어, 기술 등을 모방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민·형사상의 책임과 공고문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
- 모든 참가자는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, 적합한 수준의 대상이 없을 경우에는 선정규모를 축소 또는 변경할 수 있음
-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대하여 허위사실 발견, 자격 미달 또는 누락된 사항이 확인된 경우 선정 이후라도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,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게시글과 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 공고문을 우선함

□ 의무 및 역할

- 선정자는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,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
- 선정자는 부천산업진흥원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,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, 협약 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사업운영과 사업비 관리의 책임은 기업에 있으며, 사업비의 유용, 횡령, 편취 등 부정적 사용에 대하여 사업비를 미지급 할 수 있으며, 사업비 미지급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(선정자)에 있음
- 부천시 외 타 지역에 위치한 선정기업은 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하여 부천시에 사업장을 1년간 유지하여야 하며, 위반 시 사업비 미지급 및 채권 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

□ 문의처

- 부천산업진흥원 창업성장팀
- (Tel) 032-716-6512 / (Mail) han0616@bizbc.or.kr

[참고 1]

창업여부 기준표

신청기업	기존기업	상세 구분	창업여부
개인 사업자	개인사업자 (동종업종)	• 동종 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유지 중인 경우	창업 아님
		• 동종 업종의 개인사업자를 폐업·부도·파산하고 3년이 초과된 경우	창업
		• 동종 업종의 개인사업자를 폐업·부도·파산하고 2년 이하인 경우	창업 아님
	개인사업자 (이종업종)	• 이종 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유지 중인 경우	창업 아님
		• 이종 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유지 중이나, 타인으로부터 상속·증여받은 경우	창업
법인사업자 (동종·이종)	• 동·이종 업종의 법인사업자를 유지·폐업한 경우	창업	
법인 사업자	개인사업자 (동종업종)	• 동종 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유지 중이면서 신청기업의 과점주주 혹은 최대주주인 경우	창업 아님
		• 동종 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유지 중이면서 신청기업의 과점주주 혹은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	창업 아님
		• 동종 업종의 개인사업자를 폐업·부도·파산하고 3년이 초과된 경우	창업
		• 동종 업종의 개인사업자를 폐업·부도·파산하고 2년 이하인 경우	창업 아님
		• 동종 업종의 개인사업자를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을 위해 폐업한 경우	개인사업자 지위 승계
	개인사업자 (이종업종)	• 이종 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유지·폐업한 경우	창업
	법인사업자 (자회사)	• 신청 법인의 주주(임원 포함)가 자회사의 과점주주인 경우	창업 아님
	법인사업자 (동종·이종)	•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가 신청 법인의 과점주주인 경우	창업 아님
	형태변경	• 동종 업종을 유지한 경우	창업 아님
		• 이종 업종으로 변경한 경우	창업

※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: 양도기업(기존 개인사업자)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(창업 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)이고, 양도·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, 동종 업종, 양도기업(기존 개인사업자) 폐업 완료, 양도기업의 권리·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

※ 동종의 범위 : '한국표준산업분류(제10차)'를 기준으로 세세분류(코드번호 5자리)가 모두 일치하면 "동종" (통계청 통계분류포털(kssc.kostat.go.kr) 참조)

※ 과점주주 :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

※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(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)

① 2020.10.8.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31108호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

- "개인사업자 설립일이 '20.10.8. 이전이면서, 다른 장소에서 이 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'한 경우 "창업"으로 판단

② 영 시행(2022.6.29.)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